

『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2월 25일

제15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

제15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전 희 영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「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」를 「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전부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적용범위(안 제3조, 제4조)
-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와 기능(안 제5조)
-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 -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
 - 위탁운영기관의 의무
-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규정(안 제11조)
-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
-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청소년기본법」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의 개정 및 구미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, 「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코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미시시설관리공단, 청소년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(교)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고
-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
-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「국민 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등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50% 감면토록 규정하였으며
-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하고, 관련서류의 제출요구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저렴한 시설사용료 징수로 시민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